

## [첨부 1] 이해상충 방지정책

ESGM은 ESG 평가업무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이해상충 방지 및 관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해상충의 방지와 관리를 위한 이해상충방지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ESGM은 ESG 평가와 관련된 이해상충 및 ESGM 소속 임직원의 평가 대상기업과의 특수관계로 인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합니다.

### 1. 이해관계자 관련 이해상충 행위 금지

ESGM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ESGM 업무에 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응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 2. 평가 대상기업 관련 이해상충 행위 금지

ESGM 임직원은 ESGM의 ESG 평가 대상기업에게 유상으로 ESG 자문·컨설팅 제공 등 어떠한 명목이든 영리 활동을 하거나 평가 대상기업과 그 계열회사,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 3.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의 업무 배제

ESGM은 평가 대상기업과 사이에 특수관계(금융투자상품 보유, 신용거래 등)가 있는 임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대상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은 해당 평가 대상기업에 관한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 4. 주주구성과 이해 상충

현재 회사의 주주 구성은 ESGM 소속 임직원 및 개인 주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른 ESG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은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5. ESG 평가업무와 컨설팅, 자문 등 다른 서비스로 인한 이해상충

ESGM은 컨설팅 또는 자문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인력을 ESG 평가업무와 분리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6. 이해상충 외부제보 시 프로세스 구축

회사는 이해상충 관련 외부 제보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을 ESG위원회를 통해 심사 및 판단합니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첨부 2] 비공개정보 관리정책**

ESGM은 비공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기밀유지 정책:**

고객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기밀유지 정책을 수립하고 준수합니다. 평가대상기업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2. 내부 접근 규제:**

내부에서의 비공개 정보 접근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와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제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접근을 허용하는 내부 접근 규제를 시행합니다. 각 직원이 처리하는 정보에 따라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정보 공개를 방지합니다.

### **3. 직원 교육 및 인식:**

ESGM은 임직원들에게 비공개 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내부 규정 및 외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내부 또는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 **4. 외부 유출 방지:**

외부에서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ESG평가 데이터의 백업 플랜 마련 및 주요한 정보접근에 대해 강력한 보안 시스템 및 기술을 도입하여, 인증된 보안 절차를 따르고, 데이터 암호화 및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합니다.

### **5. 제3자 평가 및 감사:**

외부 제3자를 통해 정보 보호 및 비공개 정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개선합니다.

6. 비공개 정보의 제한적 공유:

고객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비공개 정보 공유는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목적에 맞는 인가된 공유를 유지합니다. 정보 공유 또는 전송시에는 비공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수신자 에게도 동일한 기밀성을 요구합니다.

7. 정책의 주기적 검토:

비공개 정보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산업 표준 및 법규의 변경에 대응하고, 보안 대책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합니다.

8. 비공개 정보의 폐기:

수집 목적 및 용도를 다하는 등으로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공개정보는 폐기한다. 폐기되는 정보는 완전히 소멸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폐기 대상, 방법 및 결과를 기록한다.

9. 관계법령의 준수:

ESGM 임직원은 비공개정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